#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033

발의연월일: 2021. 5. 11.

발 의 자: 백종헌・지성호・이철규

황보승희 · 장제원 · 구자근

정동만 · 서일준 · 이주환

추경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 뿐만 아니라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의 경우에도 재해대처계획을 세우는 경우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중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은 그 주체가 공연장운영자로 한정되어 있어 실제 현장에서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가 피난안내의 주지 의무가 있는지 불명확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피난안내의 주체에 공연장운영자 뿐만 아니라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실시되는 공연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제1항).

법률 제 호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702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1항 중 "공연장운영자는"을 "공연장운영자등은"으로, "공연장에"를 "공연장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17702호 공연법 법률 제17702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5(피난안내) ① <u>공연장은</u> 제11조의5(피난안내) ① <u>공연장은</u> 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 영자등은----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 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 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 · 피난 ----공연장 및 공연장 외의 장 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 거나 피난 절차, 노약자 · 장애 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 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 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② (생 략)